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6. 8 선고 2021가단1118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나54211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6. 8 선고 2021가단111883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박세진

피 고 B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김한주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6. 8.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20. 6. 23. 접수 제236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 위 적 청 구 취 지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6.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20,647,70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004,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 비 적 청 구 취 지

주문 제2, 3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0. C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합104625호)하여, 2021. 2. 18. ‘C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22.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21. 3. 6.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20. 6. 23. C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22.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책임재산에 포함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C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다. 따라서 C이 명의신탁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반환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사해행위 여부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부동산은 채무자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처분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명의수탁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를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가에 관한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계약 존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C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C의 아버지인 D 또는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을 제15, 16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매수자금을 C의 아버지 D이 마련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갑 제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2. 8.경 경남 거제시 E 및 경남 거제시 F를 G에게 매도한 사실, D이 2002. 9. 13. H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로 인하여 각 매매계약이 인접한 시점에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넘어 피고가 수령한 매매대금이 2002. 9. 13.자 매매계약의 매수대금을 사용되었다는 사실까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는 G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피고가 직접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거나 C에게 위 비용을 전보해주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수도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13호증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C 명의로 수도세가 납부되었다는 취지의 자료일 뿐 피고가 위 수도세를 출연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기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8호증을 제시하였으나, 을 제8호증은 ‘전기사용장소 및 지불지주소’란에 ‘경남 거제시 I(J) B단체 제실’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납부자를 특정한 것이 아닌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제사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④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년에 한차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제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12호증)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까지 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D 또는 K이 피고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매수과정이 적시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축문(을 제1호증)이나 결산보고서(을 제7호증)은 피고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지목이 전(田)이었기 때문에 피고 명의로 등기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경남 거제시 F 토지(2008. 7. 1. 이전 주소는 경남 거제시 L로 현재는 등기부가 폐쇄되었다)는 지목이 전임에도 불구하고 1995. 3. 7.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14886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타목) 등을 종합하면, 과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던 것인지 의문스럽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 중 건물에 대해서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⑦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은 현대식 건물로 반드시 제사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공간이 아니다.
다) 사해행위 인정 여부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 경상남도 거제시 M 전 146㎡, 경상남도 거제시 N 전 562㎡, 이 사건 부동산이 있고(경상남도 거제시 O 답 382㎡ 및 그 지상건물은 목적물에 설정된 P조합의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C의 책임재산으로 기능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경상남도 거제시 Q은 C의 소유가 아니었다), 위 적극재산의 가액은 122,719,100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는 C의 적극재산 가액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았다).

그에 비하여 갑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의 소극재산은 원고 및 R에 대한 채무 250,000,000원. S에 대한 채무 105,000,000원 상당, 주식회사

T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 상당이 있었다. 나아가 P조합에 대한 채무 역시 위 근저당권만으로 모두 변제되지 못하였고, 2021. 2. 10. 기준 488,644,109원(= 1,482,763,927원 - 994,119,818원)이 잔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C의 주된 적극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피고의 악의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 C에게 15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을 구한다.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인바 이에 대한 원상회복은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로 충분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이 사건

부동산이 C의 명의로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인해 원고 입장에서는 실제 변제에 이르기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원물반환 이후 원고가 실제 본인의 채권을 실현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바, 이는 가액배상이 가능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그 가액에 관한 판단으로 나아갈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가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물반환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20. 6. 23. 접수 제2362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동현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상남도 거제시 대 443㎡

2. 경상남도 거제시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단독주택 69.66㎡

- 이 상 -

1)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가액배상의 범위를 변경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아래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변론을 재개하지 않았다.